|  |  |  |
| --- | --- | --- |
|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민정부령 제48호《양로기구설립허가방법》은 2013년 6월 27일 민정부 부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부장：이입국2013년 6월 28일**제1장 총 칙****제1조** 양로기구설립허가를 규범화하여 양로기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및 유관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양로기구설립허가의 신청, 수리, 심사, 결정 및 관리감독검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양로기구란, 노인을 위해 집단 거주공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민정부문이 전국 양로기구 설립허가작업을 담당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양로기구 설립허가는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제2장 조건 및 절차****제6조** 양로기구 설립은 반드시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명칭, 주소, 기구 정관(章程) 및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양로기구 관련 규범 및 기술표준을 갖추고, 기본생활 주택, 시설 설비 및 활동장소가 국가 환경보호, 소방안전, 위생방역 등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관리직원, 전문기술직원 및 서비스직원을 갖춰야 한다. (4) 서비스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10개 이상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법률, 법규의 기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7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은 양로기구 소재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양로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직할시의 구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를 시행한다.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양로기구 설립허가를 시행한다.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시 직할구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위탁하여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실습, 시범기능을 갖춘 양로기구에 투자하여 설립할 경우,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 규정의 허가사항은 하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위탁하여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의 조직, 개인독자 또는 중국의 조직, 개인과 합자, 합작,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조직, 개인 및 화교독자 또는 내지(대륙)의 조직, 개인과 합자, 합작으로 양로기구를 설립할 경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문 또는 위탁한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행정기관)가 허가를 시행한다. 투자자에 대한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1조** 허가기관은 신청인이 만든 양로기구의 요구 및 조건에 근거하여, 설립조건, 제출자료 등에 대해 안내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 양로기구 설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기관에 하기 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2) 신청인, 설치기관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자격증명 문서(3) 등기규정에 부합한 기구명칭, 정관 및 관리제도(4) 건설단위의 시공검사 합격 증명, 위생방역, 환경보호부문의 검사보고 또는 심의의견, 공안소방부문이 발급한 건설공정소방설계 감사, 소방검사합격의견 또는 소방비안 증서(5) 서비스장소의 재산권증명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6) 관리직원, 전문기술직원, 서비스직원의 명단, 신분증 및 건강상태 증명서(7) 자금조달출처증명문서, 자본금납부증서 및 자산평가보고서(8) 법률, 법규, 규장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제13조** 허가기관은 반드시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자료에 대해 서면 심사 및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양로기구 설립 허가증(이하 ‘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양로기구는 허가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허가 미취득 및 등기 신청 전인 양로기구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비용을 수취 할 수 없으며 노인을 기구에 입원시킬 수 없다. 　　　**제3장 허가관리****제15조** 설립허가증에는 기구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인, 서비스범위, 유효기한 등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설립허가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되며, 원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설립허가증 양식은 국무원 민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16조** 설립허가증 유효기한은 5년이다. 설립허가증 유효기한 만료 30일 전에, 양로기구는 설립허가증, 등기증서 부본, 양로서비스제공 상황보고를 지참하여 원(原)허가기관에 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유효기한 만료 전 설립조건에 따라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기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연장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양로기구가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본 방법 제 8조, 제 9조 및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지사기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설립허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의 유관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제18조** 양로기구의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서비스 범위가 변경될 경우, 원 허가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양로기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시 설립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양로기구가 스스로 해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종지(终止)해야 하며, 설립 허가증은 원 허가기관에 반환하고 말소수속을 밟는다. 서비스를 종지한 양로기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제20조** 양로기구가 분립, 합병, 재건, 증축 등 원인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거나 해산 등 원인으로 서비스를 종지할 경우, 원 허가기관에 잠정 중단 또는 종지를 신청하고 노인안치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득한 후 종지한다. 비준을 득하지 않은 경우, 독단적으로 잠정 중단 또는 서비스를 종지 할 수 없다. **제21조** 허가기관은 반드시 완벽한 양로기구 설립 허가 정보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즉시 양로기구 설립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포한다. 　　　**제4장 감독검사****제22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양로기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서비스 범위 등 설립허가증에 명기된 사항에 변화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양로기구는 허가기관의 감독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양로기구 설립 허가 및 유관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 할 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은 이해당사자의 요청 및 직권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 또는 직무 태만으로 허가를 결정한 경우(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허가를 결정한 경우 (4)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양로기구에 대해 허가를 결정한 경우 (5)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인 경우 허가기관은 사기, 뇌물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증을 취득한 양로기구를 적발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한 후, 관련 등기 관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24조** 양로기구가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은 반드시 허가증을 말소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1) 설립허가증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양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종지(终止)된 경우 (3) 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등기증서가 취소된 경우(5)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허가사항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법규 규정상의 반드시 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인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말소한 후, 관련 등기 관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25조**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허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허가기관은 즉시 조사 및 처리한다. 　　　**제5장 법적 책임****제26조** 양로기구가 하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허가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경고 및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변경 및 종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설립허가증을 임의로 수정, 매도, 임대, 대출, 양도한 경우 **제 27조** 양로기구가 설립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허가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개인의 신변, 재산이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징계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8조** 허가기관 및 그 직원이 직권 만용, 업무태만, 사리사욕으로 양로기구 설립 허가 신청, 수리, 심사, 결정 및 감독검사를 진행한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한 주관인원 및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범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제29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 설립된 양로기구는 본 방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방법 실시 전 설립한 양로기구가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 실시 후 1년 이내로 시정해야 하며, 그 중 농촌 5보 부양(五保供养)서비스기구는 실시 후 2년 내로 시정해야 한다. **제30조** 도농 지역사회간 돌보미 센터 및 상호협조형의 양로소등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民政部令第48号《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已经2013年6月27日民政部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7月1日起施行。部 长：李立国2013年6月28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养老机构设立许可，促进养老机构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养老机构设立许可的申请、受理、审查、决定和监督检查，适用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养老机构，是指为老年人提供集中居住和照料服务的机构。 　　**第四条** 国务院民政部门负责全国养老机构设立许可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养老机构设立许可工作。 　　**第五条** 实施养老机构设立许可，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原则。 　　**第二章 条件和程序**　**第六条** 设立养老机构，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名称、住所、机构章程和管理制度； 　　（二）有符合养老机构相关规范和技术标准，符合国家环境保护、消防安全、卫生防疫等要求的基本生活用房、设施设备和活动场地； 　　（三）有与开展服务相适应的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和服务人员； 　　（四）有与服务内容和规模相适应的资金； 　　（五）床位数在10张以上；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七条** 依法成立的组织或者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自然人可以向养老机构住所地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申请设立养老机构。 　　**第八条** 县、不设区的市、直辖市的区人民政府民政部门实施本行政区域内养老机构的设立许可。 　　设区的市人民政府民政部门实施住所在市辖区的养老机构的设立许可。 　　设区的市人民政府民政部门可以委托市辖区人民政府民政部门实施许可。 　**第九条** 省级以上人民政府投资兴办的发挥实训、示范功能的养老机构，可以到同级人民政府民政部门申请设立许可。 　　前款规定的许可事项，可以委托下一级人民政府民政部门实施许可。 　　**第十条** 外国的组织、个人独资或者与中国的组织、个人合资、合作设立养老机构的，香港、澳门、台湾地区的组织、个人以及华侨独资或者与内地（大陆）的组织、个人合资、合作设立养老机构的，由住所地省级人民政府民政部门或者其委托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行政公署）民政部门实施许可。 　　法律、法规对投资者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一条** 许可机关根据申请人筹建养老机构的需要和条件，在设立条件、提交材料等方面提供指导和支持。 　　**第十二条** 申请设立养老机构，应当向许可机关提交下列文件、资料： 　　（一）设立申请书； 　　（二）申请人、拟任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资格证明文件；　　（三）符合登记规定的机构名称、章程和管理制度； 　　（四）建设单位的竣工验收合格证明，卫生防疫、环境保护部门的验收报告或者审查意见，以及公安消防部门出具的建设工程消防设计审核、消防验收合格意见，或者消防备案凭证； 　　（五）服务场所的自有产权证明或者房屋租赁合同; 　　（六）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服务人员的名单、身份证明文件和健康状况证明； 　　（七）资金来源证明文件、验资证明和资产评估报告； 　　（八）依照法律、法规、规章规定，需要提供的其他材料。 　　**第十三条** 许可机关应当自受理设立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对申请人提交的文件、材料进行书面审查并实地查验。符合条件的，颁发养老机构设立许可证（以下简称设立许可证）；不符合条件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四条** 养老机构应当取得许可并依法登记。未获得许可和依法登记前，养老机构不得以任何名义收取费用、收住老年人。 　　　**第三章 许可管理**　　**第十五条** 设立许可证应当载明机构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服务范围、有效期限等事项。 　　设立许可证分为正本和副本，正本和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设立许可证的式样由国务院民政部门统一规定。 　　**第十六条** 设立许可证有效期5年。设立许可证有效期届满30日前，养老机构应当持设立许可证、登记证书副本、养老服务提供情况报告到原许可机关申请换发许可证。 　　许可机关应当在有效期限届满前按照设立条件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做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十七条** 养老机构设立分支机构，应当依照本办法第八条、第九条和第十条的规定，到分支机构住所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办理申请设立许可手续。相关法律、行政法规对分支机构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八条** 养老机构变更名称、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服务范围的，应当到原许可机关办理变更手续。 　　养老机构变更住所的，应当重新办理申请设立许可手续。 　　**第十九条** 养老机构自行解散，或者无法继续提供服务的，应当终止，并将设立许可证交回原许可机关，办理注销手续。 　　终止服务的养老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进行清算。 　　**第二十条** 养老机构因分立、合并、改建、扩建等原因暂停服务的，或者因解散等原因终止服务的，应当向原许可机关提出申请，并提交老年人安置方案，经批准后实施。未经批准，不得擅自暂停或者终止服务。 　　**第二十一条** 许可机关应当建立健全养老机构设立许可信息管理制度，及时公布养老机构设立许可相关信息。 　　　**第四章 监督检查**　　**第二十二条** 许可机关依法对养老机构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服务范围等设立许可证载明事项的变化情况进行监督检查，养老机构应当接受和配合监督检查。 　　许可机关实施养老机构设立许可和对有关事项进行监督检查，不得收取任何费用。 　　**第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许可机关或者其上级机关，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许可： 　　（一）许可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许可决定的； 　　（四）对不符合法定条件的养老机构准予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许可的其他情形。 　　许可机关发现养老机构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许可的，应当予以撤销。 　　许可机关依法撤销许可后，应当告知相关登记管理机关。 　　**第二十四条** 养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许可机关应当注销许可，并予以公告： 　　（一）设立许可证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养老机构依法终止的； 　　（三）许可被依法撤销、撤回的； 　　（四）被登记管理机关依法吊销登记证书的; 　　（五）因不可抗力导致许可事项无法实施的； 　　（六）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许可的其他情形。 　　许可机关依法注销许可后，应当告知相关登记管理机关。 　　**第二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办法的行为，有权向许可机关举报，许可机关应当及时核实、处理。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六条** 养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许可机关应当依法给予警告，并处以3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依法履行变更、终止手续的； 　　（二）涂改、倒卖、出租、出借、转让设立许可证的。 　　**第二十七条** 未经许可设立养老机构的，由许可机关责令改正；造成人身、财产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八条** 许可机关及其工作人员在养老机构设立许可申请、受理、审查、决定和监督检查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造成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二十九条** 本办法实施前设立的养老机构，符合本办法规定条件的，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办理有关手续。 　　本办法实施前设立的养老机构，不符合设立条件的，应当在本办法实施后1年内完成整改，其中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应当在实施后2年内完成整改。 　　**第三十条** 城乡社区日间照料和互助型养老场所等不适用本办法。 　　**第三十一条** 本办法自2013年7月1日起施行。 |